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06. 17.

#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문○환	'00.11.25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	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 불이행 -1차 출석통지: '26.4.14. -2차 출석통지: '26.5.15.	○ 취업지원종료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당사자 부재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 06. 17. ~ 2026. 07. 01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담당자(Tel. 032-460-48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